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

<하도급거래 가이드>

2025. 9.

목 차

제 1 장	1
가이드의 목적 및 적용대상.....	1
하도급법 주요 개념 및 적용 범위	1
제 2 장	4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와 수급사업자의 권리	4
1. 원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4
1.1 서면 교부 및 서류보존 (§3)	4
1.2.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9)	7
1.3. 하도급대금 지급 (§13).....	7
1.4.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16-2)	8
1.5. 하도급대금 연동제 (§2⑰).....	9
2. 원사업자의 주요 금지사항	10
2.1. 부당특약 금지 (§3-4)	10
2.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4)	11
2.3. 부당 감액 금지 (§11).....	12
2.4.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8), 부당 반품 금지 (§10).....	12
2.5. 부당한 경영 간섭 금지 (§18).....	14
2.6.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2-2)	14
2.7. 그 외 금지사항	15
3. 기타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6
제 3 장	17
상생·협력 지원방안 안내사항 및 신청방법	17
1. 지원 내용	17
2. 신청 방법	18
제 4 장	20
분쟁 발생 시 사내 신고 채널	20

제 1 장 가이드의 목적 및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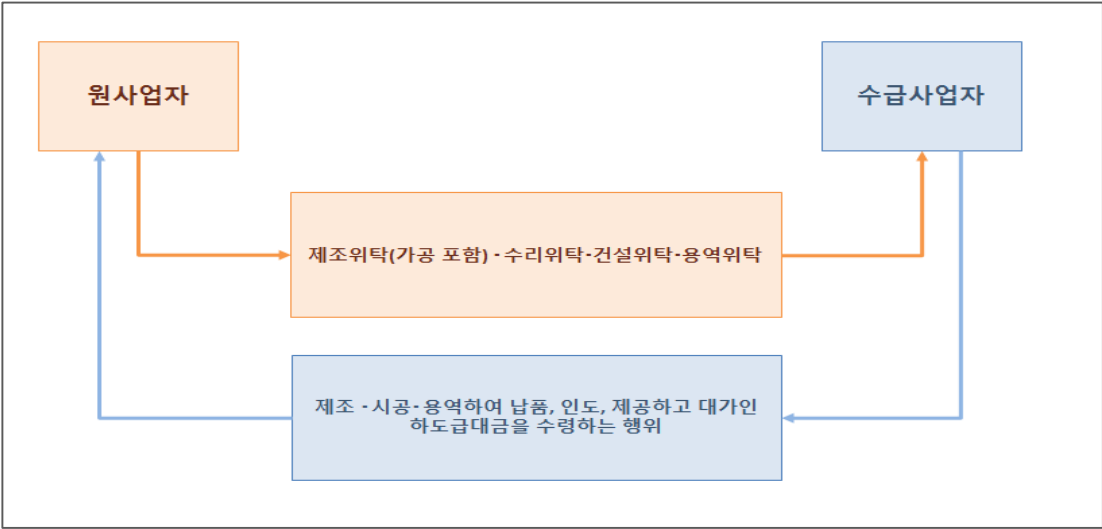
1) 본 가이드의 목적

- 본 가이드는 주식회사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YG” 혹은 “당사”)가 YG 의 사업 목적에 따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을 위탁하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혹은 “법”) 등 관련 법규가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 수급사업자에게 진행할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안내하며, 마지막으로 분쟁 발생시 사내 신고 채널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도급법 주요 개념 및 적용 범위

1) 하도급거래란?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용역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단, 하도급법은 소위 갑-을 관계에서 거래상 열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되는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국내 대기업 계열사나 외국계 대기업 계열사, 또는 중견기업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거래

(1) 제조위탁

-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형>

- 판매의 대상이 되는 제품(OEM거래 포함)을 제조위탁
- 판매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제조를 위한 (임)가공을 위탁
-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라벨, 견본품, 포장재, 사용안내서 등의 제조위탁
- 제조설비를 가지지 않아, 제조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그 판매하는 물품에 관한 제조를 타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도 제조위탁에 해당함

(2) 용역위탁

- 지식·정보성과물¹의 작성 또는 역무²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식·정보성과물 위탁의 예시>

- 음원/음반/MV 제작, 편곡 위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음원**, 제2조 제4호에 의한 **음반**, 제2조 제5호에 의한 **음악파일**, 제2조 제6호에 의한 **음악영상물**, 제2조 제7호에 의한 **음악영상파일**의 기획, 편성, 제작 위탁
- 영상/콘텐츠 제작, 편집 등 위탁: 방송프로그램, 영화, 자컨, 전자상거래 콘텐츠 등의 기획, 편성, 제작, 편집 등을 위탁
- 광고물 제작, 편집 등 위탁 : TV,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 광고 등의 광고 제작·편집물[콘티, 썸네일 등의 작업 및 편집, 음향 등 후반작업(Post Production) 포함]의 기획, 편성, 제작 등을 위탁

¹ 하도급법상 지식정보성과물은 (i) 정보프로그램, (ii)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iii)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등이 포함되며(하도급법 제 2 조 제 12 항), 구체적인 범위는 관련 고시에서 확인가능합니다(“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8-21 호).

² 하도급법상 역무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뜻하며(하도급법 제 2 조 제 13 항 제 5 호), 그 구체적인 범위는 관련 고시에서 확인가능합니다(“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23-23 호).

- 디자인(로고, 앨범자켓 제작 등) 위탁: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디자인(물품/글자체 및 화상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성과물의 기획, 편성, 제작 등을 위탁

<역무 위탁의 예시>

- 공연 연출 위탁: 공연의 기획,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미술 등을 위탁
- 광고 관련 판촉 등 위탁 :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사진)촬영 등의 활동 위탁

제 2 장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와 수급사업자의 권리

1. 원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1.1 서면 교부 및 서류보존 (§3)

- 원사업자는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사전(작업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1) 서면 유형 및 법정 의무기재 사항

의무기재 사항
① 위탁일
② 목적물
③ 목적물 인도 시기 및 장소
④ 목적물 검사 방법 및 시기
⑤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⑥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⑦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방법·절차
⑧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2) 법정기재사항의 누락에 따른 법 위반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은 불완전한 서면교부에 해당합니다.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 적법한 서면발급의 규정한 주요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기본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에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 (2)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3)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분이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 위와 같은 경우는 법정기재사항 중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과 같은 중요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정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양 당사자의 기명 날인을 받은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3) 서면 발급 시기

- 수급사업자가 위탁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이전에 계약서 '체결본'을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 서면교부 의무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인적, 물적 비용을 투입하기 이전에 거래조건을 확정하라는 취지이므로, 위탁받은 업무를 위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다만, 작업착수일은 잠재적 거래상대방에게 거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단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예컨대, 이메일이나 SNS, 전화 등으로 파트너사에게 거래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일정 등 작업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경우는 제외), 거래상대방이 확정된 이후 위탁할 업무의 진행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논의할 때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추가·변경서면의 작성 및 교부

- 원사업자가 제조 및 용역을 위탁한 이후에 해당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적인 업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추가·변경서면을 반드시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사업자는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인정 or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 기간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6) 서류 보존의무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기술자료제공요구서, 비밀유지계약서는 7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보존 의무가 있는 계약 관련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하도급계약서 (추가·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대금 산정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기타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하도급계약 확인요청 서면
 -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서면
 - 하도급대금 감액에 관한 서면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및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 금액 및 지급수단 (어음결제 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포함)이 기재된 서류

7) 주요 제재 선례

[제재 선례 1]

- 엔터사 S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소재로 한 전시관을 조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전시콘텐츠 기획 및 설계 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기간 시작일이 지난 후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함.
- 또한, S사는 공간 디자인 및 설계 업무,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위탁하면서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기재하지 않은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함.
- **(공정위 판단)** S사의 행위는 각 서면 지연 발급행위 및 불완전 서면 발급행위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재발방지명령 부과(의결(약) 제2020-046호)

1.2.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9)

-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검사결과 통보의무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법 제 9 조 제 2 항).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으며, 이를 기준으로 60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불완전한 납품 등 원사업자에게 검사결과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1.3. 하도급대금 지급 (§13)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 또는 용역 완료일 기준 60 일 이내에 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단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수정이나 납품이 있었던 경우, 최종 수정본 납품일을 기준으로 60 일 이내 대금 지급해야 하나, 목적물이 가분적인 경우(예컨대, 복수의 영상촬영물 납품) 각각의 납품일 기준으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 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을 기준으로 60 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의무

- **지연이자:** 만약,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1.4.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16-2)

-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 다음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원재료의 가격,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 2) 수급사업자의 귀책없이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 3)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 하도급대금의 조정 절차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 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반드시 수급사업자의 요청사항/금액을 반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공급원가 상승분이 현저함에도 이를 반영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연동제 (§2⑰)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당사자들 간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사전 합의된 산식에 따라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하도급법 제2조 제16항)를 말합니다. 다만 임금이나 노무비는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 중 하나로서 주요 원재료 가격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아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2항).

□ 적용의 예외

- 아래 ①~②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적지않을 수 있으며, ③과 같이 미연동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연동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미연동 취지와 사유의 작성 방법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미연동에 대한 의사 합의가 있으면 그 사유까지 양 당사자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① 하도급 거래기간 ³(개별 하도급거래의 계약상 기간을 의미)이 **90 일 이내인 경우**

³ 개별 하도급거래의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기간과 실제 거래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의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② 하도급대금⁴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③ 당사자간 하도급대금의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주요 금지사항

2.1. 부당특약 금지(§3-4)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의 예시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약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①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책임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② 원사업자가 계약상 예정되지 않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③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④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 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 ⑤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⑥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
- ⑦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영업비밀,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단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⁴ 하도급대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약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판단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4)

-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또는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의미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란, 동일 목적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나 제조위탁을 받도록 강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인지 여부**는, ① 업계 통상적인 거래 또는 다른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② 물가상승률, 원자재 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한 대가 등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추정되는 행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 ①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 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④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⑤ 협조 요청 등 여하한 명목으로 든 일방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제외하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⑥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⑦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⑧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3. 부당 감액 금지 (§11)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서는 계약상 합의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감액을 허용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하도급대금 감액 절차
- 계약상 합의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원사업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아래의 사항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합니다.

- ① 감액의 사유와 기준
②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③ 감액금액
④ 공제 등 감액방법
⑤ 기타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4.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8), 부당 반품 금지 (§10)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① 발주의 임의 취소, 변경 및 ② 목적물 수령·인수 거부 또는 지연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부당한 위탁취소(법 제8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제조나 용역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거나, 목적물 납품의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지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8조 제1항).
- **정당한 발주 취소 사유:**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은 정당한 발주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 합의된 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거나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납기를 초과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수급사업자의 파산 신청, 제 3 자에 의한 강제집행,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 결의 등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부당 반품의 금지(제10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당한 반품의 예시**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당한 반품으로 추정됩니다.

- ① 위탁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 ②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 등의 불량 또는 공급지연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5. 부당한 경영 간섭 금지 (§18)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부당한 경영간섭의 예시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추정됩니다.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6.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2-2)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위반사례 예시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①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 포함)을 요구하는 경우
- ②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③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2.7. 그 외 금지사항

□ 원사업자에 대한 그 외 금지사항으로는 다음이 존재합니다.

- **물품 등의 구매강제 (§5):**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1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i)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에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ii)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금 등을 지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12-3):**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법한 형식의 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대물변제 (§17):** 원사업자는 법에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 **보복조치 (§19):**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신고, 조정신청, 조사에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탈법행위 (§20):**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기타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 선금금 지급의무 (§6)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때,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내국신용장 개설 (§7)

-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거나 용역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합니다.

3) 관세 등 환급금 지급 (§15)

-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거나 용역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16)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변동된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제 3 장 상생·협력 지원방안 안내사항 및 신청방법

다음과 같이 YG 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최대 3 년 간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 내용

1) 안전장비 구입 지원

- 대상: 지난 1년간 당사와 거래한 영상촬영 및 공연 분야 수급사업자
- 내용: 안전장비(안전화 및 안전모 세트, 세트당 약 10만 원) 구입 지원
- 금액 및 기간: 총 1억 원 규모로 최대 3년간 고갈시점까지 지원

2) 문화 행사, 공연관람권 지원

- 대상: 지난 1년간 당사와 거래한 수급사업자
- 내용: 콘서트, 전시회 등 문화행사 관람권 무료로 지급하거나, 할인 혜택 제공
(지원 대상 문화행사는 추후 각 신청시 마다 구체적으로 안내 예정)
- 금액 및 기간: 총 5천만 원 규모로 최대 3년 간 고갈시점까지 지원

3) 법률·경영서비스지원

- 대상: 지난 1년간 당사와 거래한 수급사업자
- 내용: 법률·회계·세무 등의 교육 수강권과 경영 컨설팅 이용권 지원
(지원 대상 수강권과 이용권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안내 예정)
- 금액 및 기간: 총 5천만 원 규모로 최대 3년 간 고갈시점까지 지원

※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당사의 [상생·협력지원 TF] (partner-support@ygmail.net)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2.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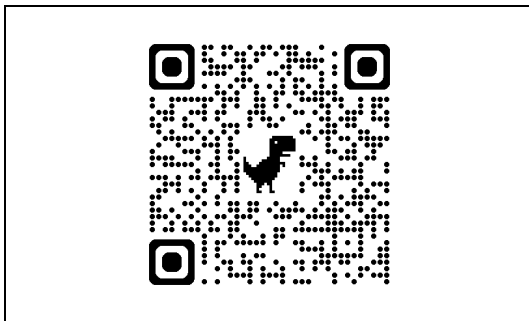
- 1) 신청 방법: 공연/영상촬영 분야 수급사업자와 그 외 수급사업자에 대한 신청 링크를 구별하여 각 아래 QR코드의 구글폼 링크에 다음 별표(*) 기재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

* ① 필수기재사항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이메일,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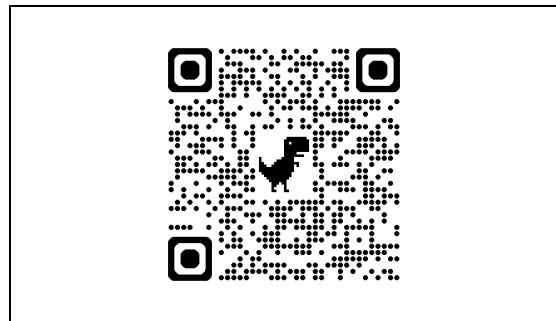
② 선택기재사항 : 기업규모(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택 1), 전년도 매출액,

③ 지원 신청 사항

[공연/영상촬영 분야]



[그 외 분야]



2) 신청 일시

□ 안전 장비

: YG 주관 공연 및 촬영 계획 시 신청 (단, 공연이나 촬영 규모, 기타 준비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문화행사 티켓

: 매 분기 또는 반기마다 신청 (단, 문화행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법률·경영 서비스

: 매 분기 또는 반기마다 신청 (현재 경영 컨설팅은 법률 분야의 로톡 또는 로앤굿과 협의 중이며, 업체와의 계약 협상, 업체의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업체는 추가·변경 될 수 있음. 법률·회계·세무 등의 교육 수강권 관련 서비스 업체는 추후 결정 예정)

3) 대상자 선정: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기업규모, 전년도 매출액)*을 기반으로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순, 각 그룹 내에선 전년도 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전년도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나, 전년도 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하기에 전년도 매출액 미 기재 시 선정에 있어 후순위로 배정됩니다.

4) 지급 일시 등

□ 안전 장비

- YG 주관 공연의 무대 설치 기간 및 촬영 세트 설치 기간 동안, 각 현장에서 현물 분출 (단, 공연이나 촬영 규모, 현장 상황, 기타 준비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안전장비 분출 대상자로부터 분출 시 안전 장비 수령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개인정보 제 3 자 제공 동의 포함)에 대한 서명 수령 (하드카피 또는 전자적 서명 중 상황에 따라 진행)

□ 문화행사

- 분기별/반기별로 지원대상 선정 후, 선정한 문화행사 티켓(1 인당 2 매) 판매 개시 이후 전자적으로 지급 (단, 문화행사 일정 및 문화행사 별 티켓 분출 시스템에 따라 변동 가능)
- 티켓 지급 대상자로부터 수령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개인정보 제 3 자 제공 동의 포함)에 대한 서명 수령 (하드카피 또는 전자적 서명 중 상황에 따라 진행)

□ 법률·경영 서비스

: 법률·회계·세무 등의 교육 수강권과 경영 컨설팅 이용권을 매 반기 또는 분기 별로 지급. 수강권 및 이용권은 선불형식으로 제공되며, 수령 후 자유로운 이용 가능함 (서비스 업체와의 상품 구성 및/또는 계약 협상에 따라 변동 가능)

제 4 장 분쟁 발생 시 사내 신고 채널

당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래 이메일로 속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partner-support@ygmail.net